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이달의 이슈와 포럼: 국고보조금

- 특별대담 합천군, 新성장동력 개발로 100년 청사진 구축: 하창환 합천군수
- 이슈 국고보조금의 보조실태와 지방 시각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방향
- 논단 논단1: 국고보조금 유감

 논단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사회 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우수사례 미국 정부의 성공에 대한 보조금(Pay for success)과 관련 사례
- 지방자치단체탐방 세계문화유산과 레포츠의 천국 정중동(靜中動)의 매력이
 돋보이는 대한민국 휴가 명소 수려한 합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통권 제 3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하혜수 / **편집위원장** 서정섭
위원 김성주 박진경 손화정 송지영 윤태섭 윤영근 주재복 최인수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연락처 T 02-3488-7361 F 02-3488-7305 / **홈페이지** www.krila.re.kr / **디자인** (주)대유키획인쇄

- 본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CONTENTS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이달의 이슈와 포럼: 국고보조금

특별대담	합천군, 新성장동력 개발로 100년 청사진 구축 : 하창환 합천군수	05
이슈	국고보조금의 보조실태와 지방 시각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방향	13
논단	논단1: 국고보조금 유감	24
	논단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사회 보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31
우수사례	미국 정부의 성공에 대한 보조금(Pay for success)과 관련 사례	36
지방자치단체탐방	세계문화유산과 레포츠의 천국 정중동(靜中動)의 매력이 돋보이는 대한민국 휴가 명소 수려한 합천	43
연구원 동정		51

이번호는
「지방자치실천포럼」입니다.





[하창환 합천군수]

합천군, 新성장동력 개발로 100년 청사진 구축

일시 및 장소: 2016년 4월 13일/합천군수 집무실

인터뷰 대상: 하창환 합천군수

인터뷰 진행: 이삼주 지방재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삼주 선임연구위원 합천군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창환 합천군수 합천군은 경상남도 서북부의 산간내륙 지대로 1개도 6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남쪽으로는 창녕군, 의령군과 서쪽으로는 거창군, 산청군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에 접하고 있습니다.

황강 하류에 자리잡은 합천군은 북쪽의 가야산을 비롯하여 서쪽과 남쪽이 모두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으로 흐르는 황강은 창녕군과 경계에서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합천군은 예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고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합천하면 세계의 자랑거리인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3대 사찰인 해인사는 팔만대장경과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 등 국보 70여 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사찰입니다.

그리고 전국 3대 대표철쭉으로 유명한 황매산 철쭉제는 매년 5월이면 진분홍빛의 산상화원을 이루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자연 그대로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합천군은 수려한 자연경관, 역사자원 등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머무르며 심신의 피로를 푸는 합천군이 되도록 여러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매산 철쭉



해인사 전경

이삼주 선임연구위원 군수님의 군정운영 철학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창환 합천군수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군민의 행복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군정’을 우리 군정의 핵심가치로 여기며, 군민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공약평가단, 여론모니터단 등 시스템을 운영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군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3선을 역임한 선배가 제가 초선된 뒤 만날 때마다 “이건 지켜야 한다”며 지적하는 내용을 적어 놨다가 정리한 「군수 십계명」을 항상 옆에 두고 매일 출



근 직후나 휴식 시간, 그리고 퇴근 때 한 번씩 읽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한 군정을 위하여 군수 십계명 중 제 1항에 나와 있는 “청렴하면 탈이 없다”라는 문구를 항상 되새기면서 솔선 실천을 통해 내년에는 전국 1위의 청렴 지자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자주 현장을 나가 군민들과 소통하며 군민이 행복한 합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며 제가 생각하는 ‘군민을 섬기는 군정’의 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삼주 선임연구위원 합천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이라는 비전을 갖고 4대 군정목표와 6대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창환 합천군수 합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안전한 합천, 청렴한 합천, 행복한 합천을 더욱 확산 심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회전교차로를 추가 설치하여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류지역 소하천까지 계속 정비하는 한편 골목재생 아트프로젝트를 실현하여 범외 없는 안전한 합천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채무 제로 및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바탕 위에서 예산 규모 5,000억 원 시대를 개막한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고스란히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합천 건설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군은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와 급경사 붕괴 위험지구 정비, 서산교 재가설,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를 통해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교통 및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합천 취수장 이전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하수관거정비 사업,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 및 환경 보전에도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은 전국에서도 최고의 공모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야로면을 비롯한 6개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단위사업과 경관 문화사업 등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통해 명품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권빈지구 새뜰마을에 대한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올해 6월중에 작은 영화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난타, 댄스, 한지공예 등을 활성화하여 문화공동체 마을 확대,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취미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돈이 되는 부자 농촌 건설입니다.

농업은 우리 합천의 중심 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정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돈이 되는 부자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군은 농림축산업 예산을 921억 원(전년대비 15% 증가)으로 편성하는 등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군이 최대 주주로 있는 (주)합천유통도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2015년도 9월, 3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흑자 전환을 이루었고 올해에는 5억 원의 흑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은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6만 원선을 계속 보장하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도 매년 25억 원 조성을 목표로 4년

간 총 100억 원을 조성하여 농축산업의 안정을 꾀하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안정 기반시설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은 돈이 되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마늘, 양파, 딸기, 도라지, 대두 5개 작물을 주력작물로 지난해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쌀막걸리 개발 및 합동양조장 건립, 양파라면 판매 보급 확대, 도라지 체험교실 운영, 농산물 경매확대, 로컬푸드 육성 등을 통해 6차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일부에선 과잉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군에서는 노인일자리아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들의 보금자리인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 노인돌봄사업 확대, 365 안심병동 운영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남부, 동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설인 권역별 복지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찾아가는 방문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 놀이체험실, 어린이 도서관, 시간제 보육실이 갖춰져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원사업을 통한 서민자녀교육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넷째,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는 이제 우리 관광의 핵심자원이 되었습니다. 제 2영상테마파크에 청와대 세트장을 완공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창조적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사례로서 벌써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와대 세트장에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여 상설전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모노레일카를 설치하고, 분재공원 조성, 역사문화체험장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6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던 황매산에도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펜션을 건립하고, 군립수목원 조성, 황매산 옛길 복원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명산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도에 개최 예정으로 있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준비도 기록문화테마파크 및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 체험공방촌 운영을 통해 세계인이 주목하는 축제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엮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바이벌, 카누, 카약, 래프팅, 경비행기 체험, 패러글라이딩 등 4계절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레저스포츠단지도 조성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영산테마파크

마지막으로, 미래 100년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치단체별로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조건입니다. 우리 군도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으며 그 결과 하나하나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도 33호선 합천 구간이 개통되었고,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었으며, 합천읍의 외연(外延)을 확장시키는 공단교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였던 남부내륙고속철도는 현재 타당성 용역

이 진행 중에 있고 함양~합천~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이 될 울곡산업단지
와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양전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의 탄
탄한 기반 위에서 합천 100년의 미래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올인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삼주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창환 합천군수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성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듯이 지방정부도 이제는 부여된 권한과 책임으로 중앙정부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연의 소임을 다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지방자치의 중요성
과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일입니다.

또한, 제약된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
선 헌법적으로 자치와 분권 정신이 천명되고, 보다 구체적인 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지방과 나누고, 자치행정권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법
령에 의해 획일적인 규제를 받는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원뿐 아
니라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자율성은 더 약화됩니다. 이 상황에서 의무 지출
을 요구하는 대규모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확대로 지방재정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의 개혁과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의 바람직한 재정분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주 선임연구위원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합천군의 미래비전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창환 합천군수 합천군은 무한경쟁시대에 미래 100년의 청사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을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 농정혁신 프로젝트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미래 먹거리산업 활성화에 주력하며 황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문화, 레저가 어우러진 체험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도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합천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황강카누길



청와대 세트장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사업평가센터소장

국고보조금의 보조실태와 지방 시각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방향

1.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고 있는 재정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 규모의 증가는 우선 사업 수에서 알 수 있는데 2007년에 1,421개이던 국고보조사업이 2015년에는 2,055개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규모는 2007년에 약 32조 원에서 2015년에 58.3조 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하였는데 이 중 자치단체 보조는 9.2%, 민간보조는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 국고보조금의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보조사업수(개)	1,421	1,711	2,003	2,081	2,053	2,035	2,080	2,031	2,055	5.0
보조금규모(조 원)	32	34.7	40.1	42.2	43.7	46.5	50.5	52.5	58.3	7.9
자치단체 보조	22.4	25	29.4	31.6	32.3	34.2	37.8	40	45.1	9.2
민간보조	9.6	9.8	10.7	10.5	11.4	12.3	12.7	12.5	13.2	4.1
정부총지출 (조 원)	238.4	262.8	301.8	292.8	310.9	325.4	349.2	355.8	375.4	6.0

그렇다면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지방교부세라면 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배분하므로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고 어느 품목에나 쓸 수 있으며 남은 예산도 반납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일부 차등보조를 하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재정력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보조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며 쓰고 남은 비용도 적게는 몇백 원까지도 정산을 해서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몇백 원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계산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까지도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 국고보조금제도의 목적과는 달리 최근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킨다면 재정보전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력 격차 완화여부에 대해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논문들에서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전체 7개 논문 중 대부분의 논문들은 국고보조금이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킨다고 하고 있으나 김종순·김성주(2008)와 김필현(2012)의 논문은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거나 형평화효과가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국고보조금 지원 이전과 이후의 형평화효과 분석 시 단순히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와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었을 때의 형평화나 불균등지수의 차이를 보면 될 것인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이에 매칭하는 지방비를 제외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재정격차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는 아래의 김종순·김성주(2008)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증가할수록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도 증가함으로써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국고보조금의 추이

저자	분석범위	측정지표	분석결과
박기목 (2006)	광역자치단체 (2001년)	변이계수	재정 불균형 감소
서정섭·조기현 (2007b)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006년)	지니계수, 변이계수, 허쉬만-허핀달지수, 집중율지수	광역자치단체·시·구: 재정력 격차 완화 군: 재정력 격차 완화

김종순·김성주 (2008)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006년, 2007년)	지니계수, 허핀달지수, 타일지수	재정 불균등 심화
주만수 (2009)	시·군 (2006년)	지니계수	재정 불균등 감소
김필현 외 (2012)	광역자치단체 (2002년~2010년)	지니계수, 변이계수, 엔트로피지수	형평화효과 미흡
홍인기 (2013)	광역자치단체 (2007년~2011년)	변이계수, 지니계수, 대수편차평균, 타일지수	재정 불균등 감소
김흥주 외 (2014)	강원도 시와 군 (2005년~2013년 격년)	지니계수, 타일지수, 엔트로피지수	형평화 효과 존재

자료: 조정래·박지윤,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형평성과 정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3호.

그렇다고 지방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지방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과 지방에서 이를 추진하는 주체의 사심이 들어가 있을 때 나타난다. 즉 기재부와 행자부를 제외한 사업 실시 위주의 중앙부처에서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사업을 발굴, 기획하여 낮은 보조율로 공모한 후 지방에 내려준다는 문제가 있다. 지방의 경우는 선거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서 표밭인 지역에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왔다는 선거용 홍보를 위해 사업비의 반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하는 것을 개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2015년에 지방자치 20년을 지낸 2016년 현재에도 중앙집권 때의 제도 운영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방자치 이후 제정된 법과 제도와는 별개로 중앙정부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법정 국비비율의 임의변경이나 보조율 개정 등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설명한다.

2. 국고보조금의 보조실태¹⁾

■ 법정 국비비율의 임의변경

1) 이하의 내용은 '임성일·김성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의 내용 일부를 발췌·정리하였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나열된 121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명시된 비율만큼의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법정 기준보조율과 달리 하향된 국비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오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조제 개·보수 사업 중 지방관리사업의 경우 2015년까지 70%를 국고보조 했으나 2016년도 예산(안)에는 50%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조림사업 중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중 일자리 창출 사업 등도 같은 경위로 법정 기준보조율과는 다르게 하향 조정되었다.

<표 3> 임의변경 예산편성된 법정 기준보조율 사업

사업명	기준보조율(%)	
	~ 2015년	2016년
방조제 개·보수 - 지방관리	70	70
조림사업 - 지역특화	70	50

사업명	기준보조율(%)	
	~ 2014년	2015년
사회적기업 육성 - 일자리 창출	75	70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50	서울 30 / 지방 50

■ 임의 하향된 국비비율대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위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 국고보조율과 다르게 하향 예산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의결되어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회에서 의결된 기준보조율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하향된 기준보조율대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 4>에서 방조제 개·보수 사업 중 지방관리부문 국고보조를 2015년도까지는 70% 했으나 2016년도 예산에는 50%로 하향 조정하여 국회 통과한 후에는 바로 2016년도 초에 하향 조정된 보조율대로 대통령령을 개정된 내용이다.

<표 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2016년 2월)

개정 전		개정 후	
사업명	기준보조율(%)	사업명	기준보조율(%)
방조제 개·보수	100	방조제 개·보수	100
가. 국가관리	70	가. 국가관리	50
나. 지방관리		나. 지방관리	

상식적으로 국가예산(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정 보조율대로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양한 행정이나 경제환경, 국제적인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법정사업의 보조율을 조정해야하는 경우는 항상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보조율을 먼저 개정한 후 그 보조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만 위의 경우는 거꾸로 진행된 것이다. 즉 대통령령과 다르게 예산편성 후 국회를 통과시킨 후에 임의조정된 보조율대로 대통령령을 개정할 경우인 것이다.

■ 국가지원 보조사업 혜택의 불공평한 수혜

국가에서 지방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모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의 경우 근거 없이 수도권 지역 중 일부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진흥지구 사업의 경우 인천시는 2008년 12월에 수도권지역으로 지정받았으나 국비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대구나 대전 등 타 광역시는 10년 가까이 꾸준히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문화 인프라의 구분기준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구분이 될 수는 없고 만약 필요하다면 우선 구분기준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표 5> 문화산업진흥지구관련 지역별 지원 현황(2002~2010)

(단위: 백만 원)

지역	유치업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비고
대구	게임, 모바일 콘텐츠, 디자인	-	-	1,000	3,000	3,000	2,850	3,000	2,850	2,850	18,550	지구 지정
광주	디자인, 캐릭터, 공예	1,884	1,900	1,900	-	-	-	-	-	-	5,684	사업 전환
대전	영상(영화중심), 게임	1,871	2,200	500	500	1,000	827	4,500	4,275	6,675	22,348	지구 지정
부천	출판만화	2,047	3,215	4,200	4,700	3,800	-	6,363	5,457	2,157	31,939	지구 지정
춘천	애니메이션	1,363	3,112	3,200	2,900	-	2,810	2,500	2,350	2,650	20,885	고시 완료
청주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산업	1,835	3,008	3,100	2,900	3,200	3,070	-	-	-	17,113	고시 완료
전주	디지털영상	-	1,565	1,100	1,000	1,500	1,450	1,250	1,800	-	9,665	지구 지정
계		9,000	15,000	15,000	15,000	12,500	11,007	17,613	16,732	14,332	126,184	

자료: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부담 과중

다문화정책사업,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경우 그 대상과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되어 매우 큰 예산낭비는 물론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적 사례가 되고 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과 산업관광사업은 같은 부처 및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사업에 공모를 하더라도 같은 성과가 나올 만큼 유사한 사업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의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중복되고,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수급 교육급여와 교육부의 저소득층 교육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자녀학자금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학비도 중복 소지가 있다.

<표 6> 부처별 유사사업 사례

사 업 명	지 원 대 상	담당부처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및 15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육부
국민기초수급(교육급여)	국민기초수급자인 초등생, 중·고생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녀교육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 장애인가구 중 - 1~3급 장애인 초등생, 중·고생 본인 - 1~3급 장애인 초등생, 중·고생 자녀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자녀(중·고생)	여성가족부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 농업인의 고등학생 본인, 손자녀, 동생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공자 학비	국가유공자 가족(중·고생)	국가보훈처
저소득층 교육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150% 이하 초등생, 중·고생	교육부

■ 사업시행 당시와 달리 중앙정부의 국비비율 임의 변경

예를 들어 2001년에 시작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50:50이었으나, 현재는 20:80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은 인력양성사업이 아니라 관광명소에 문화해설사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운영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설사들은 많은 수가 양성되어 이들이 소위 기득권층을 형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관련부처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지자체의 경우 중간에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다.

■ 공모사업 문제

“돈이 있는 곳에 공모사업이 간다”고 할 정도로 매칭 지방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공모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다. 즉, 국고보조율이 높은 양질의 보조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매우 심한데, 사업선정 시 현장방문이나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도 없이 화려한 사업계획서나 행정부서 방문 등 형식적인 절차로 실사나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이 꼭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수도권규제법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는 많은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고 있고 공모가 가능한 경우라도 토지나 인접도로 건설과 같은 인프라는 지자체에서 해결토록 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 지원이 결정될 경우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하는 조건 등이 공모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구조와 시기상 공모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 사전 통보 없는 변경 내시

매달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를 모니터링 하는 중앙부처가 사전 예고도 없이 보조금 규모를 감축하여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보조금 예측과 자금배정계획에 차질을 주는 것으로써 지방 입장에서 보조사업 수혜자 등 보조금 관리에 혼선을 갖게 되는데 즉, 예상과 달리 배정된 보조금 지원액을 보고 당황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사업(2013년)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서울 50%, 지방 70%(활동지원급여), 국고 100%(중증응급안전시스템)이다. <표 7, 8,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에서 2013년 1월에 공문을 통해 17개 시·도에 사업비 총액 368,088,000천 원을 확정내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2013년 12월에 공문(<표 8>)을 통해 중앙에서 통보된 교부결정액은 확정 내시액보다 6,000,000천 원이 적은 362,088,000천 원이 통보되었다.

<표 7> 2013년 1월 현재 공문상 확정내시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사업명	예산과목	보조금	보조구분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080-1500-1535-304-330-01	368,088,000	자치단체경상보조

<표 8> 2013년 12월 현재 공문상 교부결정액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 후 잔액 (A-B-C)
장애인활동지원	368,088,000	362,088,000	334,000,000	14,088,000	14,000,000

<표 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고보조 확정내시 및 실제교부액(2013년 12월 현재)

(단위: 천 원)

시.도명	보조내시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총액	교부 후 잔액
합 계 A=(B+E)	362,088,000	334,000,000	4,088,000	348,088,000	14,000,000
통지금액계 B=(C+D)	362,088,000	334,000,000	14,088,000	348,088,000	14,000,000
서울(C)	60,398,000	55,605,526	2,600,000	58,205,526	2,192,474
소 계(D)	301,690,000	278,394,474	11,488,000	289,882,474	11,807,526
부산	31,000,000	28,666,644	2,000,000	30,666,644	333,356
대구	22,463,600	20,751,599	800,000	21,551,599	912,001
인천	22,000,000	20,306,600	1,500,000	21,806,600	193,400
광주	16,500,000	15,179,876	1,100,000	16,279,876	220,124
대전	15,800,000	14,585,428	900,000	15,485,428	314,572
울산	5,705,900	5,289,838	0	5,289,838	416,062
세종	600,000	561,055	0	561,055	38,945
경기	69,667,800	64,263,078	2,000,000	66,263,078	3,404,722

강 원	11,400,000	10,527,374	400,000	10,927,374	472,626
충 북	13,371,900	12,362,391	500,000	12,862,391	509,509
충 남	15,110,200	13,987,911	300,000	14,287,911	822,289
전 북	15,970,100	14,715,824	300,000	15,015,824	954,276
전 남	16,100,000	14,841,060	300,000	15,141,060	958,940
경 북	19,249,100	17,676,330	288,000	17,964,330	1,284,770
경 남	21,500,000	19,816,532	900,000	20,716,532	783,468
제 주	5,251,400	4,862,934	200,000	5,062,934	188,466

자료: 지방자치단체 내부자료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연도 말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그마저도 교부 후 잔액이 17개 시·도 모두에 남아 있는 등 사전 통보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내시액과 상이한 교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지자체들은 수급자들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집행기관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전달되는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을 재정리하기 위한 행정낭비 또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된 국고보조금 교부, 이자지급 문제

상술한 바와 같이 11월 중·하순(심지어 12월)이나 정리 추경예산이 완료된 이후에 관계부처들이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고보조금 관리에 심각한 애로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기를 매칭하거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 이월예산으로 처리하거나 때로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조사업을 미집행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분야별로 시의적절치 못한 국고보조 시기

농축수산이나 녹림자원 분야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상반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 적절하지만,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관계로 적기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농림이나 녹림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동일한 시기에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상반기에 전액 교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지방 시각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관리 방향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평가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로서 국회 예산심의회 첨부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전체 사업 중 1/3씩 선정 후 평가해왔으나, 2015년부터는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2014년까지 36명이, 2015년부터는 총 56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하고 총 6개월에 걸친 서면평가(2차례)와 대면평가(2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기준은 다양한 세부기준별로 착안사항들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면서 평가자들이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듯하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 총 35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예산의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의 전 처리과정을 통합·관리 및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정산보고서의 자동화 등 업무 효율성과 편리성 강화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2017년 7월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의 관리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2개 부처의 사업들을 모두 현장에서 집행하는 입장으로서 부처를 망라한 시각에서의 국고보조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만큼 성숙되지 못한 중앙-지방 간 관계 속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일방적인 국고보조율 인하, 대통령령 개정, 사업시행 초기, 중기, 말기에 서로 다른 보조율 관행 등, 지방 입장에서의 국고보조사업 수행은 일방적으로 시달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방 시각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

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DB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별 정보를 비교·평가하여 유사·중복성 검토 후 검토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처별, 사업별 보조 실태, 변경 보조상황 등을 파악하여 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지원 실태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이상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중앙시각에서의 국고보조사업 평가 및 관리뿐만 아니라 지방시각에서의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세출 효율화가 가능하도록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 2015.
- 임성일·김성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 조정래·박지윤,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 형평성과 정책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3호.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고보조금 유감

최근 10여 년 동안 지방재정의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심의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지원받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맞물려 있다. 때로는 쌍방에 도움이 되고, 때로는 양측 모두 비효율과 낭비의 피해를 입는다.

국고보조금이 많다는 것이 지자체의 건전재정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자기 지방의 자체 재원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위험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소관부처들도 국고보조방식의 의존도가 높으면 부처 사업의 성과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분권화된 행정체제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에 적합한 재정사업관리방식을 정립하지 않으면 국고보조방식이 해당부처의 재정성과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고보조금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수는 2001년도에 600여 개였다. 지방이양과 균특회계 전환에 따라 2004년에는 350여 개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15에는 900여 개가 되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재정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집행기관으로 설정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지방재정은 79.1조 원에서 173.3조 원으로 2.2배 증가하였는데, 보조금의 규모는 11.4조 원에서 41.8조 원으로 3.7배 급증하였다. 복지보조금이 특히 많이 증대했다. 2010년도와 비교할 때 2015년의 경우 지자체 복지사업에서 보조사업의 비중은 4.37%가 증가한 91.7%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에서 보조사업 비중변화>

(단위 : 억 원, %)

		지자체 정책사업규모		보조사업비중		비중 변화
		2010	2015	2010	2015	
일반관리	일반공공행정	84,625	96,541	6.5	6.2	-0.37
	공공질서 및 안전	19,511	27,092	58.3	61.2	2.96
	소계	104,136	123,633	16.2	18.2	2.01
사회개발	교육	81,154	101,028	4.7	4.2	-0.48
	문화 및 관광	74,790	77,177	46.5	48.1	1.59
	환경보호	141,022	163,796	37.0	37.9	0.83
	사회복지	263,625	438,900	87.4	91.7	4.37
	보건	22,211	26,746	58.9	71.1	12.25
	소계	582,802	807,647	57.3	65.0	7.67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96,453	113,244	76.2	75.3	-0.83
	산업·중소기업	28,385	29,817	49.3	45.9	-3.40
	수송 및 교통	145,038	139,671	36.6	28.9	-7.70
	국토 및 지역개발	123,480	105,932	35.9	37.2	1.28
	과학기술	4,371	5,425	19.8	14.6	-5.19
	소계	397,727	394,089	46.7	45.5	-1.14
기타		44,534	61,841	-	0.0	0.03
합계		1,084,665	1,387,210	49.5	52.4	2.93

주 :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중앙정부가 지방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중앙사무를 지자체에 위탁할 때 소요 경비지원,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국가사업,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지방사업에 대한 보조 등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입장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지원의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다. 처음 두 가지의 경우 지방세입에서 재원형식은 ‘보조’이지만 실제 내용은 반드시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례와 같이 두 번째 유형은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의무분담금’이다. 국고보조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 혹은 지방비 부담 비율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에서 명기된 경우도 있고 부처에서 관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시행령에 명기된 사업 수는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기준보조율이 법정화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의미있는 구분기준은 없다. 과거의 관례와 상황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와 지방비의 의무분담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이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한 정부 간 재정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의 수준에 대한 합리적 원칙을 설정하려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앙과 지방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답을 찾지 못했다. 기준보조율은 이론보다는 정부 간의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시대 상황의 맥락이 결합한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과 합리적 재정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비판들

국고보조금의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 보다 비판적인 의견이 강하다. 정부 재정기능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역할분담이론을 정립했던 머스그레이브-오우츠 모형은 60년대 미국 재정연방주의의 논리적 기초였다. 하지만 과거의 이론이 제 1세대 모형으로 정리되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 정부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중앙과 지방의 재원이 결합된 국고보조사업 분야에서 비효율성 쟁점이 계속 발생하면서 재정 관점에서 전통적인 국고보조방식은 제도 개편의 대상이 되었다.

분권화된 국가체제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의사결정과 집행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보조사업 재정수요와 집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정보비대칭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의도한 정책기능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다. 지자체 입장에서 중

양정부의 국고보조재원은 일종의 공유재이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유치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 재원경쟁에 있어 죄수의 딜레마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의 비극 현상이 잠재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재정사업을 설계할 때 자체 재원뿐 아니라 지방재원을 함께 고려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끈끈이 효과에 따른 정부 재정규모 팽창의 주요 원인이 된다.

80년대의 낡은 정부 간 재정관계 속에서 국고보조금제도

국고보조금에서 기준보조율과 사업관리 방식은 80년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설계된 낡은 제도이다. 지방자치 부활에 따른 분권화된 정부 간 관계 형성, 국민의 복지권리를 인정한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자율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시장주의 신공공관리혁신, 그리고 지역시민사회 참여의 활성화 등과 같은 환경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현실의 문제해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도가 운영되면서 중앙-지방 간 재정갈등뿐 아니라 공공재원의 효율적인 지출관리와 성과책임에서도 많은 쟁점들이 누적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과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 의도하지 않는 지방비 징발을 강제하여 지방재정의 지출체계를 왜곡시켰다는 점이다. 최근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은 일반재원 증가율을 월등히 앞섰다. 최종예산기준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지방재정의 일반재원의 증가율은 연평균 -0.3%였으며 연도별 증감 기복이 심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3%였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연평균 4.0% 증가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사업에서 국고보조방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지자체의 일반재원 증가추세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자체 자체 사업에 충당되던 자체 재원이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되는 재정집권적 지출이 지속되었다.

산업 및 지역개발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지자체들 간 사업유치를 위한 제살까기식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국고보조금의 정치 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국고보조사업이 필요이상으로 현실에서 정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간 국고보조사업 유치의 과당 경쟁 정치를 중앙정부가 묵인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사업의 경

우 중앙정부의 소관부처가 확보한 예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최적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경쟁적 유치 활동이 확대되면 한정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을 쪼개어서 지원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많아진다. 지자체는 사업 자체의 필요성 뿐 아니라 기회가 될 때 우선적으로 재원부터 유치해야 한다는 경쟁의식이 앞서게 되어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계획의 자체 체계성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셋째, 중앙정부가 재정압박을 받을 경우 사업 자체를 축소하지 않고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사업들이 국고보조금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보조율을 낮추어도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들이 확대되면 지자체의 자체 재원들은 중앙정부 사업목적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중앙'재원의 숨겨진 저수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재원이 중앙재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기본 틀 속에 지방재정의 위치가 설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재정 운영의 비전전략체계 속에서 전국 지자체의 재정의 성격이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재정분권의 가치가 원천적으로 훼손될 위험이 커진다.

넷째, 소규모 영세 국고보조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해 재정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혁신조치였던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중앙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회계를 관리하지만 개별 사업들은 특별회계 설치 이전에 사업을 담당했던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위탁관리한다. 지자체는 할당된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별 재원을 배분하지만 제도개편 이전의 기준보조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오히려 보조율을 낮게 설정하여 과거의 보조금 문제 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다. 지자체는 사업별로 소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동시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다시 포괄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명분은 포괄보조의 혁신이지만 실체는 통제가 강화된 영세보조사업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기획재정부, 사업소관 중앙부처, 광역-기초 지자체가 소규모 국고보조

사업에 모두 관여되어 있어 사업관리체계가 복잡해지고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진다. 자칫 주인 없는 국고보조사업이 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

국고보조금이 중앙정부의 ‘갑’질 재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재정을 도와주는 ‘상생’ 재원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방사업을 추진하는 집권적인 재정운영체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역량강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집권의 정도가 과도하면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약화되면서 정부실패와 같은 형태의 재정비효율성과 분권체제의 비효과성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 간 재정관계는 집권과 분권의 적정 수준에서 균형이 중요한데, 최근의 상황들은 집권의 방향으로 과도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방향은 단순하다. 보조금 총량의 규모와 개수를 축소하여 쟁점의 여지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 지방이양이 곤란한 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산하기관이나 지방특별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집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국고보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계통이 단순화되고 재정사업의 성과책임이 명확해진다. 분권화된 국가체제에서 국고보조방식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간 성과계약을 통해 재량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80년대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보조금 준칙을 설정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성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에서 기준보조율은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50% 미만의 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이양하는 분권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50% 미만의 보조율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원분담 비율을 중앙에서 지시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율 재량사항으로 맡겨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신청주의에 따라 기준보조율이 낮은 경우에는 유사 사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은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하여 지출관리에서 지방의 재량과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수직적인 관리 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앙과 지방 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이념으로 설정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

그리고 인력 및 조직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중심의 재정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방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신사회위험에 대한 정책대응을 중앙정부가 표준적인 보조사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위험은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정부 간 복지재정관계를 개편해야 한다.

숫자상으로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사업들은 당초 분권혁신의 취지를 활성화시켜 완전한 지방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특회계에는 지역개발 관련 소규모 보조사업들이 많다. 세입재원인 주세와 개발부담금은 지방세의 특성이 큰 재원이기 때문에 국세-지방세 세원조정의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이 재정관리 실패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이 실제 의도한 구체적인 성과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광역-기초로 연결되는 중층적인 사업 및 재정관리체계를 단층화시켜야 한다. 또한 성과책임을 방향은 중앙정부 부처보다 지역주민과 지역개발의 현장을 지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조금만 유치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관례적으로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의미있는 수준에서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사업지연의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사업여건이 성숙되지 않아도 밀어내기식 보조금을 배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실집행률을 관리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재정환경은 21세기형으로 전환되었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들은 20세기의 과거에 머물고 있다. 전통적인 중앙과 지방 간 재정권력 관계 속에서 국고보조금제도를 운영하면 상호 간에 비판의 불만만 증대된다. 현실 속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심으로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제 2세대의 새로운 정부 간 재정관계 틀 속에서 제도 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오면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라 빈곤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1997년 IMF 구제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였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이후 20년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우리 사회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재정 지출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2015년 기준으로 정부 총지출 375.4조 원 중 보건복지분야는 115.7조 원(30.8%), 2016년 정부예산안 387조 원 중 보건복지분야는 122조 원으로써(31.7%)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회보장예산 비중은 '13년 24.2% → '14년 26.8% → '15년 27.8%으로, 지자체 사회보장 예산 또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반면, 한편으로는 누락, 중복, 분절, 부정수급 등 급속한 복지정책 성장의 이

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지속적인 복지사업 확충으로 복지 제도의 외형적 틀 완성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투입 대비 효과성 등, 내실화는 미흡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도 떨어졌다. 중앙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이 부처별로 시행되어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고, 사업간 전달체계의 연계성이 미흡했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충적 사회보장 사업의 성격도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된 채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서로 유기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사실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였다. 이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인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15.4)하여 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개편하여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였는데, 특히 전문위원회는 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아젠다의 발굴, 민간 전문성이 극대화된 안건의 검토, 국민과의 소통강화, 위원회 결정의 이행력 확보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내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을 신설('15.7)하여 사회보장계획의 총괄, 조정, 평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간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우선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15년도 기준 360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목적·내용 등에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5년 360개 사업이 '16년 317개 사업으로 조정되었다. 특히 '15.7월 맞춤형 급여 실시와 발맞추어 관련 사업의 정비가 중점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예로 복지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토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 되어 대국민의 접근성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

장사업 정비는 '14.11월부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비대상 선정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5.8월 총 1,496개 사업에 달하는 유사중복성사업에 대한 정비를 지자체에 권고하는 지침을 송부하였고, 그 후 권역별 간담회, 시도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정비를 지속 추진하였다. '16.3월 말 현재 지자체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이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두고 지자체의 복지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는 중앙부처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 것이며, 지자체 자체 판단하여 효율화할 부분은 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서 논의하여 '16년도 예산안으로 확정된 것을 정비 실적으로 간주하므로, 정비 결과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모범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으로 '13년 1월부터 실시된 사전협의제도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 간 또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상호 유사, 중복, 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복지재정을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협의 대상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정의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등을 총망라한다. 그러나 이는 범위가 너무나 넓기에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즉, 비예산사업, 조례안 자체,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급여 내용 등의 변경 없이 단순한 대상자 규모나 예산의 자연 증가, 기존사업의 폐지(폐지에 따른 보완책은 소명 필요),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등) 등의 사업의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

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복지재단설립, 경로단 정부양곡지원 사업,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의 협의결과가 엇갈리는 것처럼 보인 사례도 있는바 대표적인 경우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다. 전남도(해남)와 경기도와는 수차례 협의 끝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수용했는데, 이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되 감염 및 안전 관리 등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용한 사례이며, 성남시의 경우에는 현재도 성남시 관내에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급이 넘치는 점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이다. 이처럼 협의제도는 각 지역의 사정들도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협의제도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설계 시 복지부의 '사전 컨설팅'의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회보장 사전 협의제도 시행 3년간 약 500여 건의 신설·변경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 전달체계의 적절성,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시급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최근 이 협의제도를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와 정부 간 갈등이 대두된 사례는 해당 지자체의 사전 협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제도 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미흡한 점을 이용한 지자체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원인이 있었으며 복지부는 대부분 지자체와 원활히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한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의제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결과대로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위반한 금액 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협의제도에 위반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협의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적 의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12년도 26,236명에서 '14년도 30,448명으로 확충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사각지대 발굴, 심층상담을 통한 맞춤형

형 서비스 지원·연계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국 3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복지제도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든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든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몸에 혈액이 심장을 중심으로 온몸에 골고루 전달되어야 인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건강이 유지되듯이, 복지제도 또한 중앙과 지방이 서로 연계되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자라고 부족하여 사각 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한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몰려서 중복되는 현상도 바람직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유기적으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희재
지방재정연구실
수석연구원

미국 정부의 성공에 대한 보조금 (Pay for success)과 관련 사례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중앙정부 혹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가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¹⁾하고 있는 자금을 말한다. 미국 연방정부, 주 정부, 카운티 정부 등이 재정상의 원조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 정책 프로그램들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PFS(Pay for success)라고 하는 영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보조금 운영방식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운영방식 및 시행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에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2) <https://www.whitehouse.gov/omb/factsheet/paying-for-success>

2. PFS의 개념

PFS는 “성공에 대한 보조금”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성과를 내는 서비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사회 서비스는 서비스의 양이나 단기성과(output)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즉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참가자 수가 많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졸업자 수가 많으면, 해당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도 많이 지원되는 식이다. 그러나 PFS는 장기적 변화 혹은 근본적인 목표의 달성(outcome)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직업 훈련의 참가자가 취직을 하고,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직업 훈련 이후 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 줄수록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PFS 계약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측인 정부는 중립적인 평가자가 사전에 동의된 결과를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전에 동의된 결과(pre-agreed-upon result)를 달성했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방정부의 정책 사업은 높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적은 재원으로도 많은 것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

PFS는 2010년 영국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 그 모델이며,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1기 말인 2012년에 첫 번째 PFS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2016년 현재 11³⁾개의 PFS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개⁴⁾는 종료되었고, 4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개발 진행 중이다.⁵⁾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한 형태로서 정책과제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범죄, 빈곤, 교육, 문화 등의 복지사업을 벌여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만 실패하면 1원도 주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이다. 사업자금은 운영업체가 정부와 맺은 약정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면 성공한 사업에만 국가 예산을 사용하게 되므로 복지 예산 등을 아낄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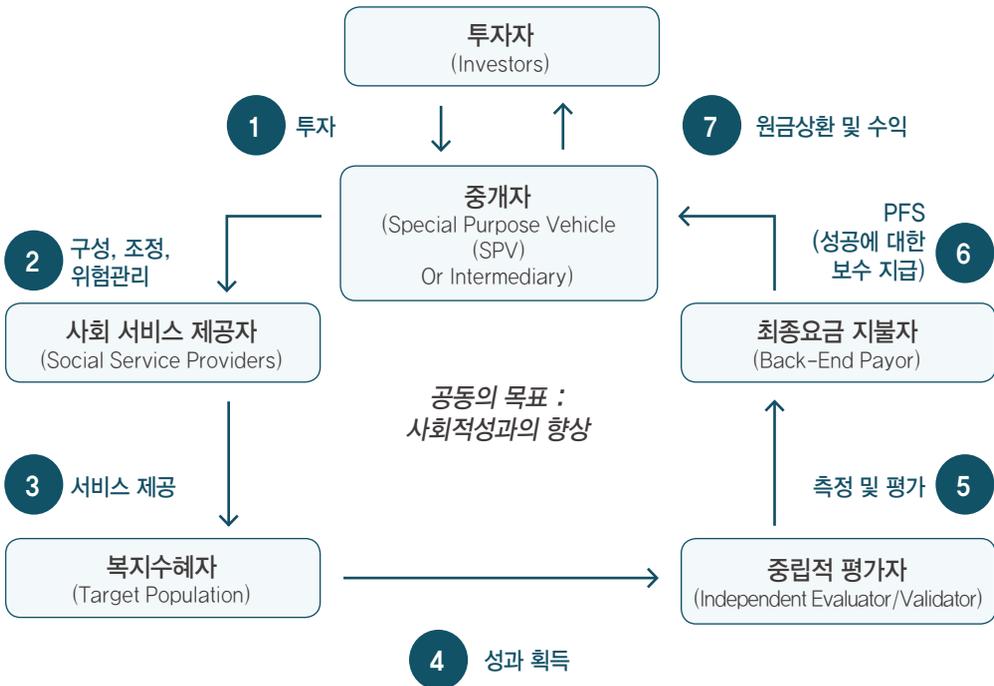
3) Connecticut Family Stability Project / South Carolina Nurse-Family Partnership Project / Denver Social Impact Bond Program / Project Welcome Home / Cuyahoga Partnering for Family Success Program / Massachusetts Chronic Homelessness Initiative / Child-Parent Center Initiative / Massachusetts Juvenile / Justice Initiative / New York State Recidivism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ject / Utah High Quality Preschool Program / The NYC ABLE Project for Incarcerated Youth

4) Asthma Management Demonstration Project

5) <http://www.payforsuccess.org/learn-out-loud/pfs-101>

정부의 고민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그림 1>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먼저 투자자는 중개자에게 투자한다. 중개자는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유력한 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을 선정한 후 이들에게 그 돈을 제공한다. 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은 대상자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나타난 성과는 독립적인 평가자에 의해 평가된다. 정부는 이 평가를 기초로 성공한 사회서비스와 실패한 사회서비스를 구분하고, 성공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만 중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보조금은 성과가 높을수록 많아진다. 보조금은 특정한 사회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므로 그 사회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낮아진 사회적 비용은 성과보수로서 중개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중개자는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1>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진행도

3. PFS의 장점

PFS에 대해 백악관은 다음 4가지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⁶⁾

첫째, PFS는 자선사업과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향상된 결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PFS는 자선사업과 다른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수혜집단이 개인별 삶의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채권들을 활용하여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사회 자활사업과 관련해 선불 자금을 투자받은 기관과 사회 자활사업의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하고자 정책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승인된 목표를 성취한 경우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불한다. 이는 정부가 자선사업과 투자자들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연계하고, 재원증거(자료) 기반의 혁신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

둘째, PFS는 많은 정책사업 분야에서 보다 나은 정책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력개발, 교육, 청소년 범죄예방, 어린 장애인 돌봄을 포함한 7개의 정책사업 영역에 걸쳐 1억 달러까지 PFS 계획자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조성된 자금들은 교육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사회보장국(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 노동부(the Department of Labor), 국립 혹은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기업(the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등의 기관들과 관련된 혁신사업 자금의 일부로 집행된다. 개별 정책사업 분야들을 통해 우리가 향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명확한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둔 정책사업 서비스 제공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근본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셋째, PFS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가 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6) <https://www.whitehouse.gov/omb/factsheet/paying-for-success>

한다. PFS는 자금 조달 기관과 연방정부, 주 정부 또는 지방정부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 집단, 달성 가능한 목표 또는 결과들, 결과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평가방법, 보수 지불계획(자금전달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하는 담당기관은 혁신적이고 자료 중심의 결과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선사업과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사업들을 진행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정책사업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수혜집단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결과와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한 결과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정부 조직들뿐만 아니라 달성한 결과에 대해서 지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또한 아래와 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이전에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는 높은 수준의 성공 가능성을 확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검증된 자료와 강력한 평가방법들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측정 가능한 결과들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경험에 따른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능숙한 관리자들을 통해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감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정부에 대한 중요한 미래 투자로 작용하여 높은 수익을 낸다.

넷째, PFS는 정부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단지 설정한 목표들을 달성했을 경우에만 보수를 지불하면 되고, 자선사업과 다른 투자자들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초기의 재정적 위험성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과거 성취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정부의 사회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는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PFS 시행사례(매사추세츠 주)⁷⁾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두 분류의 비영리 사회서비스 제공 단체들을 노숙자 문제, 청

7) <http://www.bostonglobe.com/business/2012/07/31/massachusetts-among-first-pay-for-success-social-programs/Fckml2GZ0vycLNBLXpgRCM/story.html>

소년 범죄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관한 정책사업 집행 당사자로 선정하였다. 비영리 단체들은 청소년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고, 노숙자들이 집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주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주 정부의 지출 감소분은 정책사업 집행 단체들과 후원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정책사업 집행단체들은 기부단체나 자선사업가들,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선 지급 받음으로써 정책 사업에 사용될 기금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투자자들은 정책사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투자금과 함께 일정부분의 이자를 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정책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선 지급된 그들의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방식은 정책사업의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주 정부로부터 비영리적 재정 후원자들에게로 전환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효과 없는 정책 사업에 대한 납세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 사업들은 사회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재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호소력을 갖는다. 또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며, 상호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 정책사업의 초기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해서 재정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보를 보고 싶어 하는 자선 사업가들과 기부단체들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 사업들은 수익을 낼 것이나, 매우 적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위험성에 비해서 수익이나 배당금은 시장보다 낮을 것이다.

주거지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주거문제 해결 단체인 Massachusetts Housing and Shelter Alliance는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이 단체는 주택공급 수를 220채에서 600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쓸 계획이다. 이 단체의 담당 책임자인 Joe Finn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노숙자들에게 지원되던 지출비용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그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노숙자의 거처를 마련하는 비용, 구급차 출동에 따른 비용, 응급실 진료비 등을 포함한 것보다 적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사업은 보스턴 비영리단체인 Roca 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매년 집중적으로 약 500명의 우범 청소년들이 보호 감찰이나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Roca 주식회사는 청소년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직업훈련, 지원,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자금조달 체계는 2가지 영향에 기인한다. 먼저, 새로운 기술과 자료수집 노력이 정부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게 정책 효과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정부 업무에 관해서 사업가적 관점이 도입되도록 하였다. 특히 주 정부는 성과가 높아지지 않는 방식인 교도소에 가두거나 거처를 마련해서 머물게 하는데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새로운 방식의 정책 사업은 수감횟수를 줄여서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내도록 한다. 납세자들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달성된 정책 사업에 한해서만 부담하게 되었다.

주 정부 공무원들과 사회보장 단체들은 성과 달성에 따른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데 반영할 만한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는 등 벤치마킹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약에 관한 세심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계약에 정책 사업 담당자들이 목표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금조달 체계는 영국, 호주에서 시행되어 왔으나,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계약은 미국 내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5. 한국에의 도입

다양한 PFS의 장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 특히 복지지출의 증대와 세수 정체는 PFS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PFS에서는 중립적인 평가자의 역할이 크므로 성공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익률이 낮음에도 더 나은 사회라는 가치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기부문화나 자선문화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휴가 명소 수려한 합천



세계문화유산과 레포츠의 천국 정중동(靜中動)의 매력이 돋보이는 대한민국 휴가 명소 수려한 합천

합천은 다양한 모습의 하천과 독특한 산세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경관, 정적인 풍경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이다. 가야산, 황매산을 비롯한 1천 m 가 넘는 빼어난 산들이 즐비하고 합천을 끼고 흐르는 황강은 한반도 남부의 최대 하천인 낙동강과 이어져 주변은 기름진 논밭을 이루고 있다.

황강이 연출하는 경치 또한 근사하여 래프팅, 황강변을 달리는 벚꽃마라톤대회, 수중마라톤대회까지 해마다 열린다. 그래서 합천군의 슬로건이 ‘수려한 합천’이다.

영상테마파크와 함께 추억 여행을



전국 최대 규모의 시대극 세트장인 합천 영상테마파크는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7만 4,000㎡부지에 옛 서울의 모습이 실감나게 조성돼 있다.

합천영상테마파크는 마치 타임 캡슐을 타고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것처럼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거리 속 건물과 풍경이 생생하게 재현돼 있다.



영상테마파크

2003년 개장된 이 곳은 시대극 오픈세트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태극기 휘날리며」를 시작으로 영화 「썬시봉」, 「씨니」, 「도둑들」, 「암살」등 190여 편의 드라마, 영화, CF 등이 촬영되었다.

특히, 영상테마파크 내의 주요 촬영지를 마차로 관람하며 건물의 특징, 촬영배우의 에피소드 등을 구수한 사투리로 들을 수 있고, 1960년대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운행되던 추억 속 전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평일 2회, 주말 6회에 걸쳐 세트장을 왕복 순회하는데, TV 속 시대극에서만 보던 전차를 직접 타볼 수 있어 탐방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1960년대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서커스를 4월부터 만나볼 수 있다. 카드마술, 풍선마술 등 다양한 마술쇼와 여러 나라 전통춤과 팝송 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환상적인 묘기가 결합된 아트 서커스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여기에, 7080세대들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교복, 교련복, 옛 시대극 복장 등을 입고 세트장을 누빌 수 있다. 골목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구슬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굴렁쇠, 팽파먹기 게임이 세트장 어딘가 구석구석 숨어있어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매년 여름이면 이색축제로 7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한여름 밤 무더위를 오싹하게 만들어 주는 호러축제 “고스트파크”를 개최하여 그 매력을 한껏 더 하고 있다.

합천에서 만나보는 청와대, 정원테마파크

2014년부터 영상테마파크 북측 1만 460㎡부지에 총 사업비 323억 원을 들여 청와대 세트장을 비롯해 분재공원 등을 조성 중이다.

청와대 세트장은 1992년 발간된 청와대 건설지의 내용과 사진을 발췌하여 실제 청와대를 68%로 축소하여 건축 연면적 2,068㎡ 지상 2층으로 조성하였다.

청와대 세트장 2층의 대통령 집무실은 각종 드라마 및 영화 촬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층 세종실은 회의실 및 다목적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그 외 공간은 방문객 편의시설과 체험, 전시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한편, 청와대 건물 입구에서 보이는 공간은 분재공원으로 조성된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재공원은 총면적 8만 463㎡에 분재온실, 어린이 정원, 수생 정원 등 다양한 테마의 정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영상테마파크와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모노레일카를 설치하고, 역사문화체험장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합천청와대 세트장

산상의 화원! 철쪽의 바다! 황매산

황매산은 지난 2012년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 봐야 할 50선’에 선정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야생화 군락지 100대 명소에도 선정됐으며, 한국의 명산 중 21번째로 지정되기도 한 명산으로 잘 정비된 도로 덕분에 산 정상까지 자동차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족 산행코스로서 제격인 곳이다.



황매산철쭉



황매산 캠핑장

황매산은 어느 계절에 와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봄에는 황량한 겨울을 이겨낸 초목과 붉은 철쭉이 조화를 이룬 산상화원이 펼쳐지고, 여름에는 푸른 초원과 맑은 계곡이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고, 가을에는 900고지 산자락에서 출렁이는 은빛 억새의 물결이,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온 세상을 덮는 모습에 다시 한번 찾게 되는 산이다.

또한, 해발 850m에서 즐기는 색다른 캠핑 황매산 오토캠핑장은 그 어느 곳보다 높은 곳에서 푸른 하늘을 가까이 두고 맑은 공기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캠핑족들의 입소문을 타고 ‘별과 바람의 평원’이란 별칭을 얻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로 20년이 되는 황매산 철쭉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황매산 군립공원에서 열린다.

홍류동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씻어낸다. 해인사 소리길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은 빼어난 산세로 조선팔경의 하나로 손꼽힐 만큼 절경이다. 특히, 매표소에서부터 이어지는 홍류동 계곡의 풍치가 뛰어나다.

홍류동 계곡은 계절마다 경관을 달리하는데, 특히 가을 단풍이 너무 붉어서 흐르는 물조차 붉게 보인다 하여 홍류동(紅流洞)이라 불린다. 여름 풍경 역시 가을 단풍길 못지않다.

지난 2011년에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맞아 홍류동 계곡을 6km의 7개의 다리와 500m의 데크로 새롭게 단장해 홍류동 계곡은 ‘해인사 소리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계곡길을 걷다 귀를 기울이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세월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소리길’이라 지었다.

해인사 소리길은 홍류동 계곡을 일반인들이 보다 가까이 편하게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친환경 테마로드로 가야산 권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유적과 천혜의 생태환경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볼거리를 지녔다.

수백 년 된 송림 속에서 뿜어 나오는 신선한 공기와 웅장한 바위를 휘감아 도는 청아한 물길과 폭포, 산새 소리와 해인사의 풍경소리로 마음을 씻어내고 깊은 사색을 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길이다.



해인사소리길

합천에서 뜨겁게 놀고 쿨하게 쉬자. 황강레포츠축제

백여 리에 이르는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황강에서는 여름이면 황강

레포츠축제가 개최된다. 전국 유일의 ‘황강수중 마라톤’대회는 이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수천 명이 함께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는 수중 마라톤은 전국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스포츠다. 수중마라톤은 전국 각지의 레포츠 동호인과 외국인의 참가가 늘면서 합천의 대표적인 여름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엘로리버비치 워터파크

2km, 5km, 10km 3개의 코스로 나뉘져 아마추어 마라토너부터 초보자까지 두루 즐길 수 있다. 전국 마라톤 동호인은 물론 외국인 등 매년 2,0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맑고 깨끗하기로 이름 난 황강을 달리면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수중마라톤과 더불어 황강레포츠축제에서는 모래 풋살대회, 리버 발리볼대회 등 크고 작은 스포츠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특별공연, 영화상영, 맨손은어잡기대회, 승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행사장 주변에는 래프팅을 비롯한 각종 수상레저시설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천연워터파크 ‘2016 엘로우리버비치’가 7월 중순부터 한달 간 신나는 모험을 선사한다.



황강수중마라톤대회

이밖에도 축제의 묘미를 더해줄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매일 저녁에 열리는 공연은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서 완벽한 휴가를 방문객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 최대의 기록문화유산 박람회. 대장경문화축전



대장경축전



대장경축전주행사장

2011년 고려대장경 간행 천년을 맞이한 해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팔만대장경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롭게 다가올 천년을 준비하고자 「2011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하면서 합천군 가야면에 대장경테마파크를 조성하였다.

대장경테마파크는 천년을 이어 온 대장경의 역사적, 문명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인류 공동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발현하는 이해와 발견의 공간으로 대장경 조판이전부터 경전의 전래와 결집, 천년을 이어왔던 장경판전의 숨겨진 과학에 이르는 역사의 시공간적 대장정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개최 예정인 대장경문화축전은 세계 기록문화관, 국내 최대 규모의 석가산 폭포, 어린이 놀이동산, 오토캠핑장, 5D영상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리: 윤태섭 지방재정연구실 수석연구원

'한국 ODA 현황 및 사업추진방안'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6년 3월 31일 9:30 ~ 10:30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 5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이 '한국 ODA 현황 및 사업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시·도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 일시 : 2016년 4월 5일 ~ 8일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6년 4월 5일 화요일부터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 8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6년 4월 14일 9:30 ~ 10:30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 6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016년 춘계
직원워크숍 개최**

- 일시 : 2016년 4월 20일 ~ 21일
- 장소 : 경북 울진
-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20(수)~4.21(목), 1박2일간 경북 울진(덕구온천리조트)에서 하혜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춘계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직원 워크숍의 첫날에는 완만한 경사로 이뤄진 덕구테마계곡의 산책코스를 둘러보았으며, 저녁에는 원장님과 직원들 간 소통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에는 임광원 울진군수님을 모시고 울진군 소개와 시정방침 및 향후 미래의 울진군의 방향 등을 의견교환하여 상생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파주시
주민참여예산학교
방문교육 실시**

- 일시 : 2016년 4월 21일 ~ 22일 14:00 ~ 17:00
- 장소 :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

4.21(목)~4.22(금) 이틀간 파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지역회의 위원, 희망시민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방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첫날, 이삼 주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고 둘째 날 김성주 수석연구원이 ‘지방재정·예산과정의 이해’를 신두섭 수석연구원이 ‘주민참여예산의 의의 및 기능’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육연수 [담당자: 전한규 / 02-3488-7386]

• 5월~6월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2016년 제2기 지방규제개혁 과정	3일(비합숙) (21시간)	5. 11(수) ~ 5. 13(금)
2016년 제2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과정	3일(비합숙) (21시간)	5. 18(수) ~ 5. 20(금)
2016년 제3기 주민행복 마을만들기 과정	3일(비합숙) (21시간)	5. 25(수) ~ 5. 27(금)
2016년 제3기 지방규제개혁 과정	3일(비합숙) (21시간)	6. 1(수) ~ 6. 3(금)
2016년 제3기 창조와 소통의 정부3.0 과정	3일(비합숙) (21시간)	6. 8(수) ~ 6. 10(금)
2016년 제4기 사업예산과 복식부회계 과정	3일(비합숙) (21시간)	6. 15(수) ~ 6. 17(금)
2016년 제4기 지방규제개혁 과정	3일(비합숙) (21시간)	6. 22(수) ~ 6. 24(금)
2016년 제4기 창조와 소통의 정부3.0 과정	3일(비합숙) (21시간)	6. 29(수) ~ 7. 1(금)

젊음특권 행복주택

2016년 1만호의 행복주택을 전국 곳곳에서 누려라!



젊음특권 행복주택, 전국 23곳에서 1만호가 공급됩니다!

<p>서울지역</p> <p>가좌역 / 상계장암 / 마천3 / 기양 / 신내3 / 천왕2</p> <p>1,198호</p>	<p>경기지역</p> <p>성남단대 / 고양삼송 / 화성동탄 / 안양관양 / 파주운정 / 의정부민락2 / 의정부호원 / 포천신촌</p> <p>4,212호</p>		
<p>인천지역</p> <p>주안역 / 서창2</p> <p>820호</p>	<p>충청지역</p> <p>대전도안 / 충주첨단</p> <p>478호</p>	<p>영남지역</p> <p>대구혁신도시 / 대구테크노 / 김해진영</p> <p>2,602호</p>	<p>호남지역</p> <p>광주효천2 / 익산인화</p> <p>1,514호</p>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가까운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문의처 1600-1004 (LH 콜센터)



생활을 편리하게 민원24, 편리한 연말정산, 안심상속서비스 등
정부를 유능하게 고용복지+센터 등 협업조직, 스마트 오피스 등
창업을 쉽게 데이터활용 청년창업, 워크넷 고용정보 시스템 등
국민에게 믿음을 선제적 정보공개, 열린재정시스템 등

국민을 향한 즐거운 변화

정부 3.0

국민 생활 맞춤형 서비스 정부3.0으로 국민 행복을 키워갑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개방하고 (투명한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여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정부)



행정자치부
MINISTRY OF THE INTERIOR

4월

지난호 포럼주제 : 지역협력

특/별/대/담

- 올림픽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평창군
: 심재국 평창군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서초동)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http://www.krila.re.kr>